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경기노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경기노회라 칭한다

제2조(구역): 본 회의 관할 구역은 총회에서 정하여 준 지역으로 한다. (① 과천 ② 군포 ③ 안양 ④ 의왕)

제3조(목적): 본 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수하며 교리를 보존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총대

제4조(조직): 본 회에 소속된 목사와 소속 지교회의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 자격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4조에 준한다.

- 회원- 헌법 교회 정치 제10장 제3조에 준한다.
- 준회원- 타 교단 출신 목사로 본 회에 가입한 자로서 헌법 교회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준한다.
단, 준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피선거권(임원, 시찰장, 상비부장을 제한하고, 상비부원, (임시)당회장권 등의 혜택을 주되 총회 신학원을 수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 총대 장로- 장로 총대는 헌법 교회 정치 제10장 제2조 및 제4조에 준한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 | | | |
|----------------|-----------------------|--------------|---------------|
| 1. 회장(목사)-1인 | 2. 부회장-2인(목사, 장로 각1인) | 3. 서기(목사)-1인 | 4. 부서기(목사)-1인 |
| 5. 회록서기(목사)-1인 | 6. 부회록서기(목사)-1인 | 7. 회계(장로)-1인 | 8. 부회계(장로)-1인 |

제7조(임무): 본회의 임원 직무는 각호와 같다.

- 노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노회를 대표한다.
- 부노회장: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 서기: 본회로 오는 문서와 합법적으로 제출된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이명, 소송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 모든 서류 및 인장, 고퇴를 보관하며,
 - 회의결의서를 인쇄하여 지교회로 보내며,
 - 총대 천서를 검사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 기타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록서기: 본회의 회기 회의록을 작성하며 노회 폐회 후 20일 이내에 완전히 작성하여 서기에게 전달한다.
단, 회기 시 회의록 채택은 본회의 허락(許諾)이 있으면 임원회에 맡길 수 있다.
- 부회록서기: 회록 서기를 보좌하며 본회의 회기 폐회 전에 회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회록서기와 상의한 후 서기에게 전달하며 회록서기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계: 본회가 결의한 대로 재정출납 업무를 관장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분류, 보관하고 본회의 회기 전에 감사를 마친 후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재정부 부원을 겸할 수 있다.
-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격): 본회의 임원 자격은 각 호와 같다.

- 회장: 목사 장립한지 7년 이상, 본회 가입(이명이래) 5년 이상인 회원으로 위임목사로 한다.
- 부회장: 1) 목사부회장의 경우 목사장립한지 6년 이상, 본회 가입(이명이래) 5년 이상인 회원으로 위임목사로 한다.
2) 장로부회장은 장립한지 5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 서기: 목사 장립한지 7년 이상, 본회 가입(이명이래) 5년 이상인 위임, 시무 목사로 한다.
- 부서기: 목사장립한지 7년 이상, 본회가입(이명이래) 5년 이상인 위임, 시무목사로 한다.
- 회록서기: 목사 장립한지 7년 이상, 본회가입(이명이래) 5년 이상인 위임, 시무목사로 한다.
- 부회록서기: 목사장립한지 7년 이상, 본회가입(이명이래) 5년 이상인 위임, 시무목사로 한다.
- 회계: 장로 장립한지 5년 이상인 장로 총대로 한다.
- 부회계: 장로장립한지 5년 이상인 장로총대로 한다.

제4장 임원 선거 및 임기

제9조(임원선거): 본회의 임원선거는 각호와 같다.

- 모든 임원은 4월 정기회에서 각각 투표하여 선정하되 회장과 부회장 서기는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없을 시는 3차 투표에서 최고득점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종다수(從多數)로 한다.
단, 최고득점자가 다수일 때는 2차 투표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다수일 때는 장립순서대로 한다.
- 선거위원회는 회장의 지시로 7명으로 하되 목사4인 장로3인을 기준으로 각 시찰회에서 1명씩 선정한다.
투개표위원은 7명으로하고 목사 선임이 위원장이되고 장로 선임이 서기가 된다.

3. 본회의 동의와 허락이 있을 시 회장이 지정한 전형위원들을 세울 수 있고 전형위원들의 추천 본회의 허락을 통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각호와 같다.

1.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매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 본회의 결원된 임원 보선은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선출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결원된 임원만 가능함

제11조(총회총대선거): 본회의 총회 총대 선거는 각호와 같다.

1. 4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자동 총대가 되며, 그 외 목사 총대는 위임목사로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최다점자로 하고 부총대는 차점자 순으로 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고정 총대를 선임할 수 있다. 단, 본회의 결의로 전형위원회에서 천거하여 허락할 수 도 있다.
3. 장로총대는 최다점자 순으로 하고 부총대는 차점자 순으로 한다.
4. 총회 총대는 10월 정기회에서 총회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파송이사선거): 본회의 파송이사선거는 각호와 같다.

1. 교단 신학대학교와 기독신문사, 총회실행위원회(총대5회이상 참여자), 미자립위원회, 총회선교회에 이사를 파송 하되 무기명 투표하여 종다수(從多數)로 한다. 단, 1) 최고득점자가 다수일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다수일 때는 장립순서대로 한다. 2) 기독신문, 미자립위원회의 이사는 회장이 당연직이다.
2. 유고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본회의 결의로 전형위원회에서 천거하여 허락할 수도 있다.

제5장 상비부(常備部), 시찰회(視察會), 위원회(委員會)

제13조(각상비부조직): 본회의 각 상비부조직은 각호와 같다.

1. 각 상비부 부원은 10명까지 할 수 있으되 14부를 둔다. 단, 각 상비부와 부원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각 상비부는 다음과 같다.
 - 1) 공천부 2) 헌의부 3) 정치부 4) 재정부 5) 전도부 6) 교육부 7) 군,경목부 8) 고시부 9) 면려부
 - 10) 규칙부 11) 사회복지부 12) 선교부 13) 당회록검사부 14) 감사부
3. 선출방법과 자격
 - 1) 상비부원은 본회의 4월 정기회 시 공천위원이 선정하며 본회에 보고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1씩 개선한다.
 - 2) 각 부 소집은 1년조 선임자가 하되 부장은 위임목사로 한다.
 - 3) 임기 만료된 상비부원은 동일 부서에 재임하지 못한다.
 - 4) 노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에서 제외된다.
 - 5) 정치부원은 위임목사와 장로 장립 7 이상 된 총대로 한다
 - 6) 정치부와 고시부는 겸임할 수 없다.
4. 상비부의 임무
 - 1) 헌의부: 헌의부는 합법적인 서류를 서기에게 전달 받고 본회의 회기 시 허락을 얻어 해당부서로 보낸다.
 - 2) 정치부: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사항과 본회가 맡긴 사항을 결의하여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3) 재정부: 본회의 재정(수입, 지출)을 편성하며,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4) 전도부: 전도에 관한 사항을 장리(掌理)하되 본회 산하의 기관인 남, 여전도회를 지도육성하며 감독하고 본 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5) 교육부: 모든 교육을 연구하여 지도하되 본회산하 주일학교연합회를 지도육성 관리하고, 교육에 관한 사업을 장리(掌理)하며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6) 면려부: 학생, 청년, 장년연합회를 지도 육성 및 감독하며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7) 고시부: 본회 내 각종 고시를 시행하여 본회의 회기시 보고한다(부원은 목사로 한다).
 - 8) 군, 경목부: 군,경목사업에 관한 사항을 장리(掌理)하며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9) 규칙부: 규칙에 관한 일을 장리(掌理)하며 본회의 회기시 보고한다.
 - 10) 선교부: 선교에 관한 일을 장리(掌理)하며 본회의 회기시 보고한다.
 - 11) 사회복지부: 구제 및 후생사업 일체를 장리(掌理)하며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12) 당회록검사부: 지교회의 당회록도 4월 정기회 시 검사하며 지도 육성한다.
 - 13) 감사부: 본회 및 산하 각 기관의 재정과 회계문서를 감사하여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 14) 공천부 : 각 시찰장으로 한다.

제14조(시찰회 운영):

각 시찰은 4월 정기노회의 총대로 구성하고(노회 1개월 전) 본 노회에 보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시찰위원은 시찰 형편 따라 선정한다. 단, 시찰장은 위임목사로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본회의 특별위원회는 각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수습위원회: 지교회간의 분쟁과 교인간의 어려운 사건을 자체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 할 때 이를 수습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하게 한다.
2. 자문위원회: 지교회 안에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지교회의 요청에 따라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본회가

- 택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협조하고 보고하게 한다.
3. 조사위원회: 본회와 지교회에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본회가 허락한 사건을 맡겨 조사보고 토록 한다.
 4. 재판위원회: 본회 안에 소송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본회 재판국 규례에 의거하여 재판국을 설치하고 재판결과를 본회의 회기 시 보고한다.
 5. 특별위원회 위원선정: 특별위원회 위원선정은 본회의 회기 시 투표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회원의 동의와 허락이 있으면 회장이 자벽(自辟)할 수 있고 본회가 결정한다.
 6. 특별위원회 위원 수(數): 재판국의 국원 수는 헌법교회 권징 제13장제117조에 준하며, 기타 특별위원회는 흘수로 정하되 그 중 3분의2는 목사로 한다.

제6장 회의

제16조(정기회): 본회의 정기회는 각호와 같다.

1. 헌법교회정치 제10장제2.3.4.5.6조에 준한다.
2. 1년 2회로 하되 4월 첫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와 10월 첫 주일 후 화요일 오전10시로 한다.
단, 정기회 기간이 고난주간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익일(翌日) 또는 익주(翌週)로 연기할 수 있다.
3. 4월 정기회에서는 임원선거 및 각 부서를 새로 구성 조직하고 예산결산을 하며 정책을 수립한다
4. 10월 정기회에서는 목사장립 및 강도사 인허식을 거행하고 기타사무를 처리한다.
5. 상비부회의
 - 1) 헌의부, 임원회, 정치부, 공천부(4월 정기회만)는 정기회 개최 1주일전 화요일 오후 5시에 노회 장소에서 준비회로 모인다.
 - 2) 고시부: 정기회 15일전 오후3시에 회의 장소에 모여 각종 고시를 실시한다.
 - 3) 감사부: 정기회 15일전 토요일 오후5시 회의 장소에 모여 감사한다.
 - 4) 상비부소집: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5) 상비부회의: 성수가 미달되더라도 임시결의 할 수 있지만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위원의 선정
 - 1) 통계위원: 서기, 부서기는 당연직 통계위원이 된다. 1인은 회장이 자벽(自辟)한다.
 - 2) 천서위원: 회장과 서기, 부서기로 한다.
 - 3) 절차위원: 본회의 모든 임원은 회의순서위원이 된다.
 - 4) 광고, 지시위원: 회장이 각 1인을 지명한다.
 - 5) 전형위원: 위임목사 3인, 증경장로부회장 2인으로 한다.
 - 6) 상비부 공천위원: 각 시찰장으로 한다.
7. 위원의 임무
 - 1) 통계위원: 각 교회 현황을 보고 받아 통계를 작성하고 총회총대 투표 전 당회수와 그 현황을 보고한다.
 - 2) 천서위원: 회의순서를 검사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한다.
 - 3) 회의순서위원: 회의순서를 작성하여 개회 초에 보고한다.
 - 4) 광고, 지시 절차위원: 광고 및 지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회의질서를 관장한다.
 - 5) 전형위원: 본회가 맡기는 의안을 협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6) 상비부공천위원: 상비부 1,2년조 결원 및 3년조를 공천하여 상비부를 조직하고 본회 회기 시 보고하게 한다 (본회 규칙 제16장제68조 참조).

제17조(임시회): 본회의 임시회는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필요시나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헌법교회정치 제 10장제9조에 의거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제18조(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각호와 같다.

1. 헌법교회정치 제10장제9조에 준하며, 회장의 필요시 혹은 상회의 지시가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2. 본회에서 위임한 일만 처리하여 보관한다.

제19조(특별위원회): 본회의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건이 있을 시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장 고시(考試)

제20조(목사고시): 본회의 목사고시는 각호와 같다.

1.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회에서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자로서 헌법 교회정치 제14장 제1조에 의거한 자로 한다.
2. 고시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헌법교회정치 제10장제6조제7항) 등이다.

제21조(목사후보생고시): 본회의 목사후보생고시는 각호와 같다.

1.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자로서 당회장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
(계속추천을 원할 시에는 고시 없이 당회장의 신학계속 추천 청원으로 본회가 발급한다).
2. 고시과목은 성경, 영어, 상식, 면접 등이다.

제22조(전도사고시): 본회의 전도사고시는 각호와 같다.

1. 헌법교회정치 제3장제3조제1항제2목에 의거하여 독실한 신앙으로 전도에 사명감이 있고 상당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회장이 추천하는 남, 여에게 고시한 후 자격을 부여한다.
2. 고시과목은 성경, 영어, 정치, 예배모범, 상식, 면접 등이다.

제23조(장로고시): 본회의 장로고시는 각호와 같다.

1. 장로고시는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 피택 된 자로 한다.
2. 고시과목은 성경, 소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등이다. 단, 무임장로(본 교단)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3. 장로고시를 청원할 시 당회는 공동의회의 상황(공동의회 일자, 총투표인수, 찬성표수)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제출해야한다.
4. 장로선택 허락을 받고 1회기동안 지교회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 연기청원을 하면 1회기만 허락한다.

제8장 임직(任職)

제24조(임직식): 본회의 임직식은 각호와 같다.

1. 목사임직식과 강도사인허식의 예배순서와 안수위원선정은 절차위원회에 일임한다.
2. 목사로 임직할 때 회장은 먼저 안수 받을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위원과 함께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가운(gown)착의식과 함께 악수례를 행한다(헌법교회정치 제15장제10조제2항).

제25조(목사임직 및 위임): 본회의 목사임직 및 위임은 각호와 같다.

1. 목사임직은 헌법교회정치 제15장제1조에서 제10조에 의거하여 본회가 고시 후에 시행한다.
2. 목사임직 시에는 반드시 부인도 동석함이 가당(可當)하다.
3. 목사위임은 해당 시찰회 또는 임원회의 주관으로 거행 할 수 있으되 시찰장이 위임국장이 되어 거행한다. 단, 위임국장은 위임목사라야 한다.
4. 본회에서 목사 위임허락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위임식을 거행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회가 1회 연임 청원을 하여 본회의 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강도사인허)

본회의 강도사 인허식은 총회로부터 강도사고시 합격증이 접수 되면 헌법교회정치 제14장제5조에 의거하여 그 회기 내에 시행한다.

제27조(장로임직): 본회의 장로임직은 각호와 같다.

1. 지교회가 장로를 임직하려면 헌법교회정치 제5장제3조에 의거하여 교회의 선택청원, 노회의 허락, 교회의 피택, 고시청원, 본회고시, 고시합격 후 교회의 임직 등의 순서로 시행한다.
2. 교단 내 타 교회에서 이명 온 장로를 시무하게 하려면 교회의 인준청원, 본회의 허락, 교회의 피택 후 취임하게 한다.
3. 지교회가 타 교단에서 전입 한 장로를 시무하게 하려면 교회의 인준청원, 본회의 허락, 교회의 피택, 본회 정치부의 면접을 거쳐 취임하게 한다.
4. 타 교단에서 목사가 교회와 함께 본회에 가입할 경우 목사는 헌법교회정치 제15장제13조에 의거하여 준회원으로 받고 장로는 본회 정치부의 면접을 거쳐 장로로 취임하게 한다.
5. 장로고시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안에 임직하여야 하나 지교회의 사정이 있을 경우 1회기 재연장청원을 하여 본회의 재(再)허락을 받아야한다(취임건도 동일하다).

제9장 재정(財政)

제28조(노회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지교회가 부담하는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정기회 이후 다음해 4월 정기회 전까지로 한다.
3. 각 지교회는 상회비를 매월 회계에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회비를 본회기 개회 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회원과 총대 호명은 하되 언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일체 중지 되고 각종 청원서류를 받지 않고 증명서발급도 중지된다.
4. 지교회의 상회비 미납금은 이월금에 포함하여 회계에게 납부해야만 한다.
5. 상회비 완불시 중지의 건은 자동 회복된다(본회규칙 제 35조제3항).
6. 가입(이적)교회의 상회비는 본회(임시회 포함)에 가입된 회기부터 적용하되 상회비는 임원회에서 책정하여 통보해 준다. (당해년도 회계 기간만 한시적 적용)
7. 회계는 재정 상황을 정기회전에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장 행정절차(行政節次)와 시행세칙(施行細則)

제29조: 본회에 상정하는 모든 서류는(소송 및 진정) 정기회 개회 20일 전까지 하되 시찰회를 경유하여 본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타 노회 목사가 본회에 위임 청빙이 있을 시는 정기회 1개월 전에 해야 한다. (헌법교회정치제16장제2조).

그리고 긴급 동의안을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인 이상 서명을 받아 개회 후 3시간 이내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장로고시 응시자는 총회성경통신과를 출입해야 한다.

제31조: 본회에 참석하는 총대장로는 매년 4월 정기회 개회 20일 전 총대천서를 서기에게 보고해야한다.

제32조: 목사나 전도사의 자격고시를 청원할 경우 당회장의 추천서와 이력서를, 강도사의 인허를 청원할 경우에는 당회장의 추천서와 고시합격증과 이력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정기회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3조: 교회조직허락, 장로증원허락, 목사위임 허락은 1회기를 경과하면 그 효력이 자동 정지된다.

단, 사정이 있는 경우 본회에 통보하고 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본회서식 청원서에 요구하는 첨부된 서류일체로 하되 인허, 고시, 청빙에 대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강도사인허청원
 - 1) 본인의 청원서 1통
 - 2) 당회장 추천서 1통
 - 3) 강도사 고시 합격증 사본
 - 4) 이력서 1통
 - 5)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1통
2. 강도사고시청원

- 1) 본인청원서 1통
 - 2) 당회장추천서 1통
 - 3)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목사고시청원
- 1) 본인청원서 1통
 - 2) 강도사 인허증 사본 1통
 - 3) 당회장청원서 및 추천서 1통
 - 4) 청빙서 1통
 - 5) 이력서 1통
 - 6)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7) 주민등록등본 각1통
4. 목사청빙
- 1) 당회장청원서 3통
 - 2) 공동의회회의록사본 3통
 - 3) 이력서 3통
 - 4) 청빙서 3통
 - 5)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3통
5. 목사후보생 고시청원(전도사 고시)
- 1) 당회장추천서 1통
 - 2) 본인청원서 1통
 -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4) 전도사 또는 신학지원동기서 1통(200자 원고지 5매)
 - 5) 이력서 1통(세례년도와 교회 명기할 것)
 - 6)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제35조: 본회 지교회는 통계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목사 후보생 및 전도사 고시청원은 고시부에서 그적성(신상)을 심사하고 신학계속청원은 교육부에서 주관한다.

제37조: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은 헌법교회정치 제4장 제4조 제 2항에 준한다.

제38조: 본회 지교회는 부교역자를 채용할 시 본회에 소속한자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교회 형편을 고려하는 것이 편하다.
타 회에 소속한 자를 채용할 시 6개월 이내에 이명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며, 부목사 청빙의 경우 미조직교회는
헌법교회정치 제4장제4조제3항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기에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없다.

제39조: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시찰회와 관계기관 파송이사 등은 정기회에 보고할 문서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정기회 15일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서기는 정기노회 한 달 전에 정치부, 교육부, 고시부에 관련된 청원 건을 통보하고, 개회 15일 전까지 접수 된 각종
문서들을 취합하여 임원회에서 확정한 회순과 함께 회의순서록을 만들고 그것을 본회의 시작까지 배부하도록 한다.

제41조: 본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당회장, 상비부장, 시찰회, 위원회, 명의로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

제11장 부칙(附則)

제42조(수정과개정): 본회의 규칙 수정과 개정은 각호와 같다.

1. 규칙을 수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찬동으로 수정 및 개정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2. 규칙의 수정 및 개정위원은 위임목사3인, 장로총대2인으로 한다.
3. 규칙의 수정 및 개정의 가결은 정기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미비점): 본회의 규칙에 대한 미비점은 총회의 헌법과 만국통상법(萬國通常法)에 준한다.

제44조(규칙효력): 본회의규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주후 2002년 7월 9일 통과
주후 2012년 10월 9일 1차 개정
주후 2021년 4월 6일 2차 개정